

6 대표적인 착오 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

① '24.7.1. 연도 중 중간 입사자의 근무기간을 '24.1.1.~12.31.로 신고

- 총급여 1,000만원이며, 총근무일수가 184일인 근로자
 - 적정 기준소득월액 : 1,630,000원 ($10,000,000\text{원} \div 184\text{일} \times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819,000원 ($10,000,000\text{원} \div 366\text{일} \times 30$)
- ➔ 근무시작일을 입사일(7.1.)로 신고

② '24년 12월 급여를 '24년 1월 지급 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

- '24.11.1. 입사하여 11월 급여(100만원, '24년 12월 지급), 12월 급여(100만원, '25년 1월 지급) 발생
 - 적정 기준소득월액 : 983,000원($2,000,000\text{원} \div 61\text{일} \times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491,000원 ($1,000,000\text{원} \div 61\text{일} \times 30$)
- ➔ '24년 12월분 급여를 소득총액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③ 휴직기간 미반영 : 휴직을 하였으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4.1.1. 입사, 총급여 2,000만원이며, 90일간 산전후휴가였으나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일부(100만원) 발생
 - 적정 기준소득월액 : 2,065,000원($19,000,000\text{원} \div 276\text{일} \times 30$)
 -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 1,639,000원 ($20,000,000\text{원} \div 366\text{일} \times 30$)
- ➔ 소득총액에서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휴직일 수 (90일)를 신고

④ 퇴직금 정산 등으로 주(현)과 종(전)으로 분리 신고하고,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다른 기준으로 신고

- 주(현) 급여총액은 퇴직금 정산 후 지급된 급여총액으로, 주(현) 근무기간은 1년으로 신고 ⇨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됨
- ➔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총액이 일치되도록 신고

7 소득총액 신고 Q&A

Q 과세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며 공단이 과세자료를 입수·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 후 통지합니다. (단, 소득총액 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 ⇨ $2024\text{년 소득총액} \div 2024\text{년 근무일수(근무기간-휴직일수)} \times 30$
- 사업장에서는 6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단은 6월초부터 EDI를 통해 과세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을 사전 안내합니다.

Q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 2024.12.1.이전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서하단 여백에 추가 기재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고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로 그은 후 여백에 "상실"이라 기재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

Q 인턴(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소득총액 신고방법은?

- ④ 입사 당시부터 인턴(시보)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
 - ▶ 전체 근무기간 및 해당기간에 발생한 총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 ⑥ 인턴 기간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사전예측불가)
 - ▶ 근로계약 변경 이후의 근무기간 및 동 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예시) '24.1.1. 입사, 3개월 인턴(총급여 300만원), 4월부터 정규직(총급여 1,800만원)
 ⇨ ④의 적정신고 기준소득월액 : 1,721,000원 ($21,000,000\text{원} \div 366\text{일} \times 30$)
 ⇨ ⑥의 적정신고 기준소득월액 : 1,963,000원($18,000,000\text{원} \div 275\text{일} \times 30$)
 ※ 공단에서는 전년도 취득(납부제개)자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소급 정정 하오니, 취득(납부제개)자의 소득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024년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으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소득총액 신고 대상(5유형)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총액신고서에 실제 휴직일수를 기재하고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24년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3.6%)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Q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나요?

-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6,370,000원, 하한액 400,000원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매년 3월 고시, 7월부터 적용)
 ※ A값 :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물가상승 반영)

Q 연봉제 시행으로 개인별 소득이 공개되면 안되는데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6월 발송)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웹EDI 서비스 가입(<http://edi.nps.or.kr>) 후 신고 신청 ⇨ 연금고유신고 ⇨ 소득총액신고 화면에서 "우편발송 제외 신청"을 하시면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가 EDI로만 발송됩니다.

2024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수록내용

1. 소득총액 신고란?
2.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흐름
3. 소득총액 신고 방법
4.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 대상
5.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6. 대표적인 착오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
7. 소득총액 신고 Q&A



1 소득총액 신고란?



-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자료상이자, 과세자료 보유자 중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2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 흐름

- 2025년 4월 2024년 근로소득자료 입수, 소득총액 신고대상 선별
- 2025년 5월 소득총액 신고 안내 및 신고서 발송·접수
- 2025년 6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발송
- 2025년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고지
- 2025년 10월 국세청 과세자료 대비 소득 적정신고 여부 재확인 실시

3 소득총액 신고방법

신고대상

- 2024.12.1.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 납부예외중인 자 및 2024.12.2.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제외
 - * 2024.12.2.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취득(납부재개)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2026.6.30.까지 적용

신고사항

- 근무기간** : 2024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4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24년 중도 입사자는 2024.1.1.이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 휴직일수** : 2024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기재
- 소득총액** : 위 근무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상의 ⑪번 소득금액
- 근로자(외국인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현)근무처의 ⑩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⑩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은 포함]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24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QR웹팩스, FAX로 제출

- 국민연금 웹EDI(<https://edi.nps.or.kr>) 및 사회보험 EDI 서비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하여 신고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nps.or.kr>)참조

신고기한 2025년 6월2일(월)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5.6.30.(월)까지 신고 가능]

4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 대상

소득총액 신고서의 신고유형란에 유형 표기

유형	발체 대상	발체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소득 신고자료 없음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소득 신고자료가 없거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	연말정산 신고 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산전후 · 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기간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3유형, 4유형, 5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 소득월액은 2025년 7월~2026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2025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의 9%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내연금(<http://csa.nps.or.kr>)” 또는 “국번없이 ☎ 1355(유료)”로 확인하세요.



작성방법 예시

근로자

* '24.3.1. ○○상사에 입사, 5.1.부터 5.31.까지 휴직, 6.1.부터 복직
(단,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고, 선원 국외근로 비과세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소득도 없음)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계
⑨근무처명 ⑩사업자등록번호	○○상사	□□기업			
⑪근무기간	2024. 3. 1. ~ 2024. 12. 31.				
⑬급 여	15,000,000	3,000,000			18,000,000
⑭상 여	5,000,000	500,000			5,500,000
⑮인정상여 계	20,000,000	3,500,000			23,500,000

2024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근무시작일	공적 휴직일수	실제 휴직일수	소득총액
0001	홍○○	123456-12****	2024.3.1.	3. 1.	0	31	20,000,000

근무시작일 작성방법

- 동일 사업장에 2024.1.1.~3.25. 및 2024.8.1.~12.31. 근무 ⇒ 8.1.
- 실제 근무기간은 2024.1.1.~12.31.이나 2024.7.1. 국민연금 가입 ⇒ 1.1.
- 분리적용 관계에 있는 A사업장에 2024.1.1.~4.30. 근무, B사업장에 5.1.~12.31. 근무 ⇒ 1.1.(분리적용 사업장간 전입·전출시 합산하여 기재)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

*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국외근로 비과세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량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 ☑ 2024년 한 해 동안 휴직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득으로 신고
- ☑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 파악이 곤란한 해외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신고

개인사업장사용자

2024년 귀속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30 (부동산임대소득)	40 (사업소득)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⑨ 총수입금액	20,000,000	30,000,000
⑩ 필요경비	5,000,000	10,000,000
⑪ 소득금액(⑨-⑩)	15,000,000	20,000,000

* 해당 사업장 소득금액을 소득총액에 기재하시되, 복수(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은 소득총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